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이서은 소유물건 (2025타경12754)
의뢰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양제륜
감정평가서번호:	이정250624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정희감정평가사사무소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이정희

감정평가액	이억사천삼백만원정 (₩243,000,000.-)					
의뢰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양제륜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1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이서은 (2025타경 12754)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7.01	2025.06.30 ~ 2025.07.01	2025.07.02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다세대주택	1개호	다세대주택	1개호	-	243,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243,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쌍문동 소재 "서울쌍문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다세대주택 "한솔리치빌" 제비동 5층 502호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경매업무를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2. 감정평가의 근거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의 관련규정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정평가이론 및 기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방법

가.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평가목적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방법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시산가액을 산정한 후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평가전례 등 참고가격자료를 통해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1.>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1.>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 21.>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기준시점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인 2025년 07월 01일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②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5.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06월 30일에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공부를 기준으로 대상물건의 현황등을 점검, 물적동일성을 확인하고 가격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본건은 현장조사시 폐문 부재로 인하여 부득이 외부관찰 및 공부상 도면으로 도시 및 기재하였으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참고사항

가. 본건의 소재지, 지번, 면적등은 귀 제시목록에 의거하였습니다.

나.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게 되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토지·건물가격의 구분평가가 곤란하나, 귀 원의 요구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주거용 토지·건물배분 비율표에 의거하여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

1. 대상물건의 개요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720-2 (강북구 노해로33가길 21)				
건물명. 동. 층. 호	한솔리치빌 제비동 제5층 제502호				
사용승인년월	2003년 05월 01일	단지규모	1개동 8개호		
면적 (㎡)	전유면적	공유면적	공급면적	대지권	지하주차장
	65.46	6.93	72.39	30.86	-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방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의 비교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시산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거래사례의 선정

인근지역 내 거래사례로 대상물건과 가깝고, 물적유사성이 높고, 비교적 최근에 거래된 거래사례 중 <사례 4>를 선정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AIS정보체계)

사례	소재지	건물명	층/호수	전유면적 (㎡)	대지권 (㎡)	거래금액	거래시점
1	수유동	다세대주택	2/○○	40.04	25.17	190,000,000 (@4,745,000)	240627
2	수유동	삼성S클래스	2/○○	28.19	18.55	160,000,000 (@5,676,000)	241028
3	수유동	다세대주택	6/○○	41.91	25.17	250,000,000 (@5,964,000)	241010
4	수유동	한솔리치빌	4/○○	67.98	32.01	241,000,000 (@3,545,000)	240509
5	수유동	수유럭스빌	1/○○	69.9	39.66	210,000,000 (@3,004,000)	240430

4.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인근유사물건 평가선례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시점수정

[서울특별시 강북지역 동북권 다세대 매매가격지수]

거래사례 4	매매가격지수
2024.05.09 ~ 2025.07.01	1.01623
연립다세대	
지역 : 서울 강북지역 동북권(24.05.09~ 25.07.01)	
거래시점 : 2024.05.09, 2024년04월 지수를 적용 함	
기준시점 : 2025.07.01, 2025년06월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발표이전 이므로 2025년 05월 지수를 적용함	
2024.05.09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4년04월) : 98.6	
2025.07.01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5년05월) : 100.2	
시점수정치 : $100.2/98.6 \approx 1.0162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가치형성요인비교

[사례4 대비 본건]

구분			비 고
요인구분	세 부 항 목	격차율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1.00	유사함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등)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파워	1.00	유사함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년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 계단식)		
호별요인	층별효용도	1.03	층별효용도 우세
	향별효용도		
	위치별효용도(동별 및 라인별)		
	전유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대소		
	내부 평면 방식(베이)		
	소음등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유사함
누 계		1.0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7. 매매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거래사례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전용면적비교	비준가격
241,000,000	1.00	1.01623	1.03	65.46/67.98	243,000,000

※ 비준가액 결정시 백만단위까지 산출하였으며, 십만단위에서 사사오입하였음.

III. 참고가격자료

1. 인근 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건물명	층/호수	전유면적 (㎡)	대지권 (㎡)	평가가액	기준시점
1	수유동	한솔리치빌	3/○○	66.58	적정	228,000,000	210319 담보
2	수유동	자산하이빌	3/○○	43.35	25.45	220,000,000	240417 담보
3	수유동	한솔리치빌	2/○○	65.31	33.05	170,000,000	210126 담보
4	수유동	자산하이빌	2/○○	40.75	23.95	161,000,000	201022 담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경매통계자료

통계기간	서울특별시 강북구	
	낙찰가율(%)	낙찰건수
최근1년간 (연립.다세대)	82.78	131

3. 인근 주민 탐문조사

인근 유사규모 공동주택의 지상층 가격수준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00,000원/㎡ ~ 5,500,000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IV. 감정평가액 결정

가. 상기 참고가격자료(평가전례, 주민에 대한 탐문에 의한 가격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격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감정평가전례 및 인근가격수준 등을 참작하여 본건 감정평가액을 **243,00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720-2	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251.1		243,000,000	비준가격 공유부분포함	
	한솔리치빌 비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33가길 21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5층 공동주택 1층	14.16			
					2층 - 4층 각각	145.12			
					5층	140.08			
					내 철근콘크리트조 5층 502호	65.46			65.46
	위 1.토지의 H 지권/소유권			30.86	30.86				
				x----- 251.1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배분내역 170,100,000 72,900,000		
	합 계						₩243,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강북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본건 유사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혼재하는 기존 주택지대로서, 학교,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시설 등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 하였을 때, 전반적인 주거여건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5층 건으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방3, 거실, 주방, W.C, 발코니, 현관)

(5) 설비내역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이며, 상·하수도 시설 및 기본적인 위생설비 등이 있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은 인접토지 및 도로와 등고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 토지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2-1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사항은 미상임.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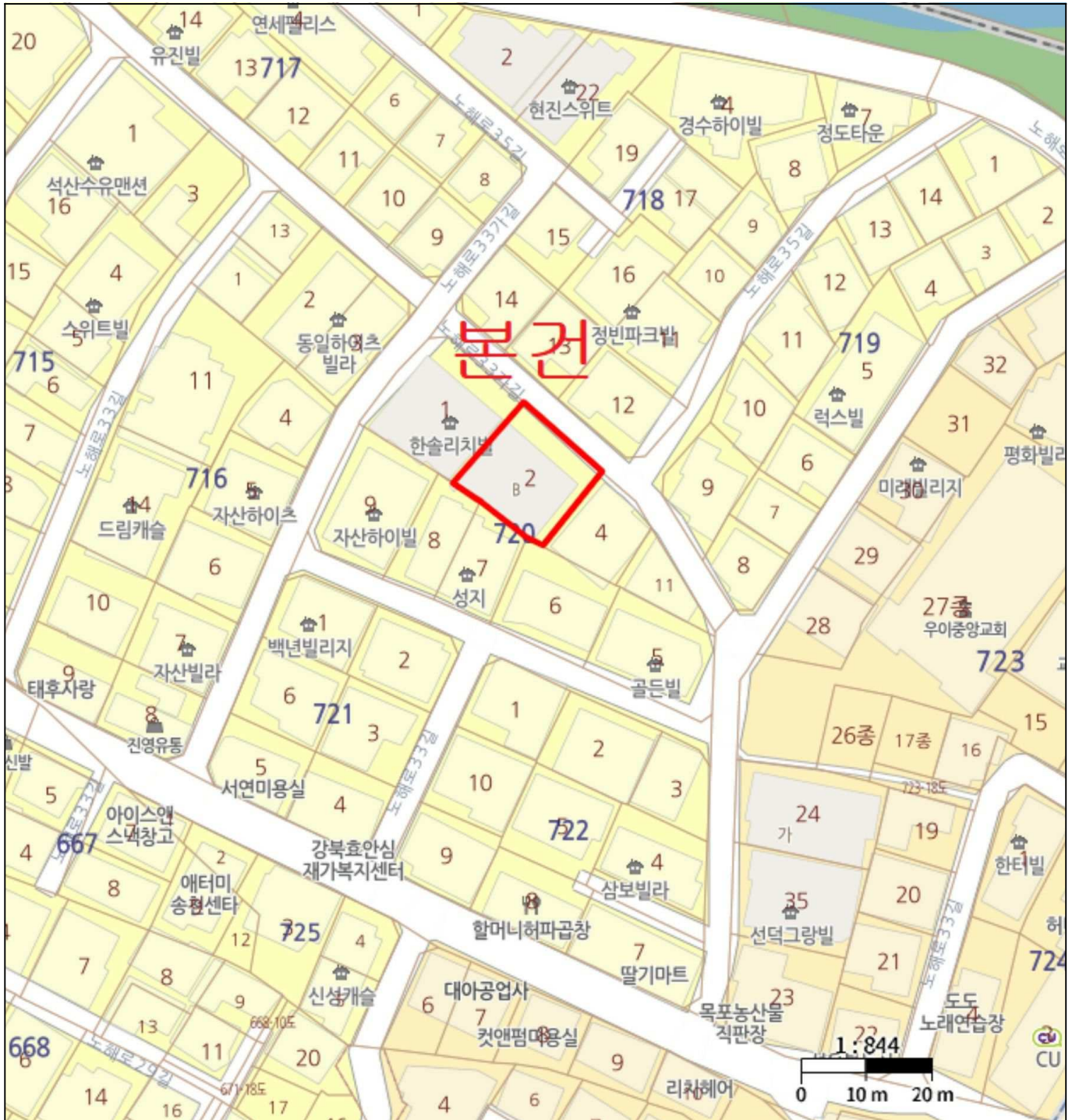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720-2 한솔리치빌 비동 5층 502호
-----	--------------------------------------



위 치 도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720-2 한솔리치빌 비동 5층 502호
-------	--------------------------------------



내부구조도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720-2 한솔리치빌 비동 5층 502호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